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타 위원회 중복 위임제한 횟수, 청렴서약서 제출 등을 명문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안건처리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 ○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음. ○ 위원 위촉 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개정안	“ 별 지 참 조 ”
산구조문대비표	“ 별 지 참 조 ”
관계법령 발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관련사업 계획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해 당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위촉된 위원은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위촉(임명)(임기 2년, 20 .00.00 ~ 20 .00.00)됨을 동의합니다.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근 무 처 :
- 직 위 :
- 이 메 일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 택 :
 - 사 무 실 :
 - 이 동 전 화 :
- 팩 스 :

20 . 00. 00.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렬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정직
· 공정 · 성실하게 위원회의 자문 · 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반부패 · 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 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관
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근 무 처 :

직 위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p> <p>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 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p>④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p>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간으로 한다.

-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위촉된 위원은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

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발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6.] [법률 제12974호, 2015.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3.11.] [대통령령 제26142호, 2015.3.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의3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삭제 <2009.8.5.>

③ 삭제 <2009.8.5.>

④ 삭제 <2009.8.5.>

[본조신설 2006.3.23.]